

저수조 위생점검 기준(제22조의3제1항 관련)

건축물의 명칭	
소유자(관리자)	
설치장소	
건축물의 용도	공동주택·사무실·상가·학교·공장·병원·여관·기타
위생점검실시일	

조사사항	점검기준	적부 (○· ×)
1 저수조 주위의 상태	청결하며 쓰레기·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, 용수 등이 없을 것	
2 저수조 본체의 상태	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·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·밀폐되어 있을 것	
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	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	
4 저수조 안의 상태	오물, 붉은 녹 등의 침식물, 저수조 내벽 및 내부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(浮遊物質)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	
5 맨홀의 상태	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	
6 월류관·통기관의 상태	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	
7 냄새	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	
8 맛	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	
9 색도	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	
10 탁도	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	